세종 한신더휴 리저브(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O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나릿재마을 6단지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2.14.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한다)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12.14.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신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thehu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부산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 – 공공택지 / 부산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전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대구시 수성구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규정에 따라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함.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포함)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본 아파트의 85㎡이하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85㎡초과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이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 제65조 관련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 3605호(2017.12.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O2블록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지상49층, 5개동 3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아파트 555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67대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185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1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주택형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그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이전기관종사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당해	기타	신혼부부 당해	기타	노부모부양 당해	기타	계	일반공급	해당동	최저층 우선배정세대	입주예정시기
민영주택	2017001780-01	84.7990A	84A 84A1	84.7990	36.0345	120.8335	6.3837	54.8463	182.0635	38.3307	56	28	6	3	3	3	3	1	1	48	8	602동,603동	–	2021년 8월
	2017001780-02	84.7818B	84B	84.7818	36.0608	120.8426	6.3825	54.8352	182.0603	38.3230	51	25	5	3	3	3	3	–	–	42	9		2	
	2017001780-03	84.8075C	84C	84.8075	35.1307	119.9382	6.3844	54.8518	181.1744	38.3346	4	2	–	–	–	–	–	–	–	2	2		–	
	2017001780-04	84.7749D	84D 84D1	84.7749	40.0635	124.8384	6.3819	54.8307	186.0510	38.3198	4	2	–	–	–	–	–	–	–	2	2		–	
	2017001780-05	84.9050F	84F	84.9050	33.9816	118.8866	6.3917	54.9149	180.1932	38.3787	76	38	8	4	4	3	3	1	1	62	14	601동	2	
	2017001780-06	99.9109A	99A	99.9109	42.6986	142.6095	7.5214	64.6204	214.7513	45.1616	128	64	–	6	6	–	–	2	2	80	48	602동,603동	4	
	2017001780-07	99.9703B	99B 99B1	99.9703	43.0466	143.0169	7.5259	64.6588	215.2016	45.1885	11	8	–	–	–	–	–	–	–	8	3	604동,605동	–	
	2017001780-08	99.6508C	99C	99.6508	42.5872	142.2380	7.5018	64.4522	214.1920	45.0440	2	1	–	–	–	–	–	–	–	1	1		–	
	2017001780-09	99.6997G	99G 99G1	99.6997	46.4140	146.1137	7.5055	64.4838	218.1030	45.0661	18	9	–	1	1	–	–	–	–	11	7	601동	–	
	2017001780-10	99.5978H	99H	99.5978	45.7790	145.3768	7.4978	64.4179	217.2925	45.0201	1	–	–	–	–	–	–	–	–	–	1		–	
	2017001780-11	99.5736I	99I	99.5736	45.8666	145.4402	7.4960	64.4023	217.3385	45.0091	17	8	–	1	1	–	–	–	–	10	7		–	
	2017001780-12	99.5692J	99J	99.5692	46.8300	145.3992	7.4957	64.3994	218.2943	45.0072	1	–	–	–	–	–	–	–	–	–	1		–	
	2017001780-13	99.9430K	99K	99.9430	45.6243	145.5673	7.5239	64.6412	217.7324	45.1784	1	–	–	–	–	–	–	–	–	–	1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타입	전용면적(㎡)	동별(라인별)	층	세대수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회(10%) 2018.07.16	2회(10%) 2019.01.15	3회(10%) 2019.07.15	4회(10%) 2020.01.15	5회(10%) 2020.07.15	6회(10%) 2021.01.15	잔금(30%) 입주지정일
84A	84.7990	602동 (1호)	8,9	2	79,562,520	285,637,480	–	365,200,000	36,520,000	36,520,000	36,520,000	36,520,000	36,520,000	36,520,000	36,520,000	109,560,000
			10–19	10	79,562,520	296,937,480	–	376,500,000	37,650,000	37,650,000	37,650,000	37,650,000	37,650,000	37,650,000	37,650,000	112,950,000
			20–29	10	79,562,520	304,537,480	–	384,100,000	38,410,000	38,410,000	38,410,000	38,410,000	38,410,000	38,410,000	38,410,000	115,230,000
			30–39	10	79,562,520	312,037,480	–	391,60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117,480,000
			40	1	79,562,520	323,337,480	–	402,90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120,870,000
84A	84.7990	603동 (1호)	9	1	79,562,520	268,337,480	–	347,900,000	34,790,000	34,790,000	34,790,000	34,790,000	34,790,000	34,790,000	34,790,000	104,370,000
			10–19	10	79,562,520	279,037,480	–	358,60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20–29	10	79,562,520	286,237,480	–	365,80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109,740,000
84A1	84.7990	602동 (1호)	7	1	79,562,520	296,637,480	–	376,200,000	37,620,000	37,620,000	37,620,000	37,620,000	37,620,000	37,620,000	37,620,000	112,860,000
84A1	84.7990	603동 (1호)	8	1	79,562,520	278,737,480	–	358,300,000	35,830,000	35,830,000	35,830,000	35,830,000	35,830,000	35,830,000	35,830,000	107,490,000
84B	84.7818	602동 (4호)	6–9	4	79,546,371	284,253,629	–	363,80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109,140,000
			10–19	10	79,546,371	295,453,629	–	375,0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20–29	10	79,546,371	302,953,629	–	382,50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114,750,000
			30–36	7	79,546,371	310,453,629	–	390,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84B	84.7818	603동 (4호)	6–9	4	79,546,371	277,053,629	–	356,60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106,980,000
			10–19	10	79,546,371	288,153,629	–	367,70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110,310,000
			20–25	6	79,546,371	295,453,629	–	375,0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84C	84.8075	602동 (1호)	3	1	79,570,491	267,729,509	–	347,300,000	34,730,000	34,730,000	34,730,000	34,730,000	34,730,000	34,730,000	34,730,000	104,190,000
			5	1	79,570,491	279,029,509	–	358,60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107,580,000
84C	84.8075	603동 (1호)	4	1	79,570,491	254,729,509	–	334,300,000	33,430,000	33,430,000	33,430,000	33,430,000	33,430,000	33,430,000	33,430,000	100,290,000
			6	1	79,570,491	269,129,509	–	348,70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104,610,000
84D	84.7749	602동, 603동 (4호)	28	1	79,539,895	302,160,105	–	381,700,000	38,170,000	38,170,000	38,170,000	38,170,000	38,170,000	38,170,000	38,170,000	114,510,000
			39	1	79,539,895	317,460,105	–	397,0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84D1	84.7749		26	1	79,539,895	328,560,105	–	408,10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122,430,000
			37	1	79,539,895	344,960,105	–	424,500,000	42,450,000	42,450,000	42,450,000	42,450,000	42,450,000	42,450,000	42,450,000	127,350,000
84F	84.9050	601동 (2호)	5	1	79,661,966	294,538,034	–	374,20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112,260,000
			6–9	4	79,661,966	302,438,034	–	382,100,000	38,210,000	38,210,000	38,210,000	38,210,000	38,210,000	38,210,000	38,210,000	114,630,000
			10–19	10	79,661,966	314,238,034	–	393,90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118,170,000
			20–29	9	79,661,966	322,138,034	–	401,80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120,540,000
			30–39	10	79,661,966	330,038,034	–	409,70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122,910,000
			40–43	4	79,661,966	341,838,034	–	421,500,000	42,150,000	42,150,000	42,150,000	42,150,000	42,150,000	42,150,000	42,150,000	126,450,000
84F	84.9050	601동 (3호)	5	1	79,661,966	260,538,034	–	340,200,000	34,020,000	34,020,000	34,020,000	34,020,000	34,020,000	34,020,000	34,020,000	102,060,000
			6–9	4	79,661,966	267,738,034	–	347,40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104,220,000
			10–19	10	79,661,966	278,438,034	–	358,10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107,430,000
			20–29	9	79,661,966	285,638,034	–	365,300,000	36,530,000	36,530,000	36,530,000	36,530,000	36,530,000	36,530,000	36,530,000	109,590,000
			30–39	10	79,661,966	292,838,034	–	372,50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111,750,000
			40–43	4	79,661,966	303,538,034	–	383,200,000	38,320,000	38,320,000	38,320,000	38,320,000	38,320,000	38,320,000	38,320,000	114,960,000
99A	99.9109	602동 (2호)	3	1	93,741,230	281,235,245	28,123,525	403,10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120,930,000
			4	1	93,741,230	285,235,245	28,523,525	407,500,000	40,750,000	40,750,000	40,750,000	40,750,000	40,750,000	40,750,000	40,750,000	122,250,000
			5	1	93,741,230	293,235,245	29,323,525	416,300,000	41,630,000	41,630,000	41,630,000	41,630,000	41,630,000	41,630,000	41,630,000	124,890,000
			6–9	4	93,741,230	301,144,336	30,114,434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10–19	10	93,741,230	313,144,336	31,314,434	438,20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131,460,000
			20–29	10	93,741,230	321,053,427	32,105,343	446,900,000	44,690,000	44,690,000	44,690,000	44,690,000	44,690,000	44,690,000	44,690,000	134,070,000
			30–39	10	93,741,230	329,053,427	32,905,343	455,70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136,710,000
			40	1	93,741,230	341,053,427	34,105,343	468,900,000	46,890,000	46,890,000	46,890,000	46,890,000	46,890,000	46,890,000	46,890,000	140,670,000